〈총회 운영 규약〉 2024 년 3 월 12 일 제정

제 1 장 총칙

제 1 조(목적)

이 규약은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 범위)

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.

제 3조(용어의 정의)

-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'의안'은 총회에서 심의하고 토의할 안건을 말한다.
 - 2. '안건'은 논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며 의안과 그 밖의 사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.
 - 3. '의결'은 의논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가결과 부결을 포함한다.
 - 4. '표결'은 안건에 대하여 가부 의사를 표시하여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 2 장 총회의 운영

제 4 조(총회개최공고)

공고방법은 정관 제 33 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5 조(총회소집통지)

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전화번호(문자), 이메일 또는 SNS를 활용할 수 있다.

제 6조(재적조합원의 확정)

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총회개최 전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.

제 7조(조합원명부 비치)

재적 조합원의 이름을 정리한 조합원명부(선거인명부)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총회개최일 총회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 8 조(의결권 및 선거권)

- ① 조합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정관 제 37 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의결권이 없다.
 - 1. 총회일 현재 정관으로 정한 최소 출자좌수를 납입하지 않은 자
 - 2. 총회일 현재 탈퇴 처리된 자 또는 총회에서 제명이 승인된 자

제 9 조(대리인의 자격)

① 대리인의 자격은 기본법 23 조(의결권 및 선거권)와 정관 제 38 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조합의 지정된 양식에 따라 총회 개회 7 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0 조(회의참여 및 외부인사참석)

- ① 사외이사 및 간부를 비롯한 조합의 직원 등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②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도 총회에 참관인으로 배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 11 조(의결정족수)

- ①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1. 정관의 변경
 - 2. 협동조합의 합병·분할·해산·휴업 또는 계속
 - 3. 조합원의 제명
 - 4. 제명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
 - 5.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의 사항
 - 6.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
- ② 제 1 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2 조(의결사항)

-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기본법 29 조(총회의 의결사항 등)와 정관 제 34 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. 다만 조합원 5분의 1의 동의가 있는 경우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.
- ③ 총회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 분의 2 이상의 출석자 출석조합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결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.

제 13 조(의사의 진행)

- ①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,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②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정관으로 정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.

제 14 조(정회 또는 회기 연장)

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은 정회 또는 회기연장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 15 조(표결방법)

표결은 거수,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은 총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 방식을 정할 수 있다.

제 16 조(표결절차)

표결절차는 아래 각 호 사항의 순서대로 한다.

- 1. 의안에 대한 제안 및 설명은 이사장 또는 제안자가 한다.
- 2. 의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
- 3. 표결방법 제안
- 4. 표결
- 5. 결정사항에 대한 공표

제 17 조(표결의 순위)

-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.
- ② 수정안이 2 개 이상 있을 때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.

제 18 조(의사록의 작성 및 보존)

-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서기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의사록에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3 인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.
- ② 기명날인 된 의사록은 5년 이상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- ③ 의사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 - 1. 총회의 종류
 - 2. 총회공고일자
 - 3. 개최 일시 및 장소
 - 4. 재적 조합원 및 참석 조합원 수
 - 5. 회의의 목적 사항
 - 6. 전차의사록 낭독 및 승인여부
 - 7. 의사의 진행 경과 및 결과
 - 8. 기타 필요한 사항

제 19 조(회의의 공개)

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.

부칙

제 1 조(시행일)

이 규약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총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.